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9호)에 따른 공고

1. 관련: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 안전처고시 제2022-9호) 제54조제3호
2. 위 호에 따른 ‘식약처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장소’ 는 다음과 같음
  - 「통계법」 제22조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체인화 편의점(체인 공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씨스페이스, 이마트24, CU, GS25
3. 동 공고는 2022년 7월 20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시행 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유효하며, 공고 유효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식약처장이 정하는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제품은 계속하여 판매 가능

2022년 7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